우정사업본부



Contents

| 제1편 국내우편5 |
|--------------------------------------|
| 제1장 총론7 |
| 제2장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14 |
| 제3장 우편물의 접수23 |
| 제4장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26 |
| 제5장 그 밖의 우편서비스 35 |
| 제6장 우편에 관한 요금 40 |
| 제7장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46 |
| 제8장 그 밖의 청구와 계약 52 |
| 제9장 우편물류 57 |
| |
| 제2편 국제우편65 |
| 제1장 국제우편 총설67 |
| 제2장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76 |
| 제3장 국제우편요금 86 |
| 제4장 국제특급우편(EMS)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 ··· 94 |
| 제5장 각종 청구제도104 |
| 제6장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요금의 반환 108 |





(



•

제1편 국내우편

제1장 | 총론

제2장 | 우편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

제3장 | 우편물의 접수

제4장 | 국내우편물의 부가서비스

제5장 | 그 밖의 우편서비스

제6장 | 우편에 관한 요금

제7장 |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제8장 | 그 밖의 청구와 계약

제9장 | 우편물류



•



(



제 1 장 | 총론

제1절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1. 우편의 의의

- 가. 좁은 의미 :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 넓은 의미 :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나.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에 따 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 다.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라.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

2. 우편사업의 특성

- 가.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구성원이 국가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상 제약이 많지만. 적자가 났을 때에는 다른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정부기업 :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 · 관리 · 경영하는 기업
- 나. 우편사업의 회계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운영 효율성을 확보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으로서의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면의 조화가 과제이다.

제1장 총론









다.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Colin Clark)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노동 집약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한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경영에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우편의 이용관계

가. 개념

- 1) 우편 이용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 2)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私法)상의(개인 적 계약관계(통설)이다. 다만, 우편사업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용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다.

나. 우편 이용관계자

우편 이용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다. 우편 송달 관계의 권리와 의무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수수료 징수권 등 발송 송달요구권, 우편물 반환 청구권 등, 수취인은 우 우편물 수취권, 수취거부권 등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진다.

라. 우편이용계약의 성립시기

- 1)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은 때를 계약의 성립시기로 본다.
- 2)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계약의 성립시기가 된다.

4.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가. 경영주체

1)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우편법] 제2조 제1항) "관장"이라 함은 관리와 장악을 말하는데 경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의미한다.

8 제1편 국내우편







2)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나. 서신독점권

- 1) 우편법 제2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몽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신독점권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2)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다. "서신"이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외한다. ([우편법 시행령] 제3조)

다. 우편에 관한 법률

경영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가) 우편법

우편법은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경영 형태·우편특권·우편 서비스의 종류·이용조건·손해배상·벌칙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법률 제542호(1960. 2. 1.), 최근 개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우편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이다.

※ 최초제정: 법률 제3601호(1982. 12. 31.), 최초 개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 사업범위는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이다. 조직·인사·예산·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최초제정 : 법률 제5216호(1996. 12. 30.), 최근 개정 법률 제14839호(2017. 7. 26.)

제1장 총론 9











제2절 통상우편물

1. 개념

가. 개념

- 1)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및 소형포장우편물
 - 가) '서신'은 의사전달을 위하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 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 나) 의사전달물 : 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가)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대통 령령에서 정하여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우편물(「우편법」제1조의2제7호, 동법 시행 령 제 3조 관련)
 -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화물 첨부 서류 혹은 송장, 외국과 수발하는 국 제서류, 본점과 지점 상호간 또는 지점 상호간 12시간 이내 수발하는 서류, 신용카드
 - 다) 통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보조화폐, 은행권 등
 - 라) 소형포장우편물 :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물건을 말한다.

2. 규격우편물의 요건

가. 규격 요건(봉투에 넣어 봉합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 <u> </u> | .건 | 내용 |
|----------|----------------------------|--|
| ① 크기 | 세로 (D) 가로 (W) 두께 (T) | - 최소 90mm, 최대 130mm(허용 오차 15mm) - 최소 140mm, 최대 235mm(허용 오차 15mm) - 최소 0.16mm, 최대 5mm(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
| ② 모양 | | - 직사각형 형태 |
| ③ 무게 | | - 최소 3g, 최대 50g |
| ④ 재질 | | - 종이(창문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

16 제1편 국내우편







| | \sim |
|-------|------------|
| +4 | -) |
| - \ ▼ | • |

| 요건 | 내용 |
|--------------------------------|--|
| ⑤ 우편번호 기록 <개정시행 2015.8.1.> | - 수취인 우편번호(국가기초구영 체계로 개편된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일체 가려짐이 없어야 함 -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 여백규격 : 상·하·좌·우에 4mm 이상 여백 · 위치 : ⑦의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의 기재사항의 아래쪽,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는 다른 사항 표시 불가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 여야 함 |
| ⑥ 표면과 내용물 |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불가 봉할떄는 풀, 접착제 사용(스페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용불가) 우편물의 앞・뒤, 상・하・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함(접착식우편물 포함 특정부분 튀어나옴・눌러찍기・돋아내기・구멍뚫기 등이 없이균일해야 함 ※ 종이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
| ⑦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공간 * 허용오차 ±5mm | -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mm×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 뒷면 : 왼쪽 끝에서 140mm×밑면에서 17mm |

나.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

| 요건 | | 내용 |
|------|------------------|--|
| ① 크기 | 세로 (D) 가로 (W) | - 최소 90mm, 최대 120mm(허용 오차 ±5mm) - 최소 140mm, 최대 170mm(허용 오차 ±5mm) |
| ② 형식 | | - 직사각형 형태 - 별도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형태 |
| ③ 무게 | | - 최소 2g, 최대 5g(다만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3mm를 넘는 경우에는 최고4g, 최대 5g) |
| ④ 재질 | | - 종이 |







| 요건 | 내용 |
|--------------------------------|---|
| ⑤ 우편번호 기록 <개정시행 2015.8.1.> | - 수취인 우편번호(국가기초구영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일체 가려짐이 없어야 함 -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 여백규격 : 상·하·좌·우에 4mm 이상 여백 · 위치 : ⑦의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의 기재사항의 아래쪽,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는 다른 사항 표시 불가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 여야 함 |
| ⑥ 표면과 내용물 | -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불가 - 특정부분 튀어나옴·눌러찍기·돋아내기·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종이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
| ⑦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공간 * 허용오차 ±5mm | -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mm×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

다. 사제엽서의 규격 요건 :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엽서규격 충족

라. 권장요건

- 1) 색상은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 색이나 밝은 색
- 2) 지질(재질)은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 3)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 표시
- 4) 봉투 뒷면, 우편엽서 기재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 5)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기재 가능
- 6)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으로 인쇄, 다만 사제엽서는 예외
- 7)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이의 요건
 - 가) 띠종이의 크기
 - (1) 신문형태 정기간행물용 : 세로(70mm 이상)×가로(최소90mm~최대235mm)

18 제1편 국내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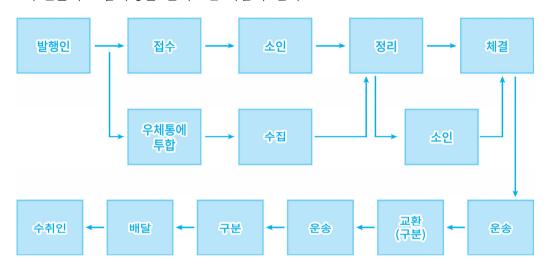


제 9 장 | 우편물류

제1절 우체국 물류의 흐름

1. 우편물의 처리과정

우편물의 일반취급은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전반적인 처리과정을 말한다. 우편물의 흐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우편물의 발송

가. 발송기준

- 1) 발송·도착구분 작업이 끝난 우편물은 운송방법지정서에 지정된 운송편으로 발송한다.
- 2) 우편물의 발송순서는 특급우편물, 일반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 순으로 발송한다.
- 3) 우편물 발송시 운송확인서를 운전자와 교환하여 발송한다.

나. 일반우편물

- 1) 일반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는 운송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
- 2) 우편물은 형태별로 분류하여 해당 우편상자에 담되 우편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형태별로 묶어 담고 운송용기 국명표는 혼재 표시된 국명표를 사용한다.

제9장 우편물류 57











- (1) 최대규격: 110×220mm, 최소규격 : 90×140mm(허용오차 2mm)
- (2) 가로와 세로의 비율: 가로는 세로의 1.4배 이상
- (3) 중량은 5g 이내
- (4) 색깔: 바탕은 연청색, 전면 가장자리는 적색 및 청색
- (5) 발송인이 아닌 자의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

라. 인쇄물(Printed papers)

- 1) 허용된 물질(종이, 판지나 일반적으로 인쇄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2부 이상을 생산한 복사물
- 2)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함
- 3) 무게 제한: 5kg까지
- 4) 인쇄물 요건이 아닌 것 중 인쇄물로 취급하는 것
 - 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통신강의록, 학생들의 과제 원본과 채 점 답안. 단, 성적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항은 기록할 수 없음
 - 나) 소설원고, 신문원고, 필서 한 악보

마. 소형포장물(Small packet)

- 1) 내용품이 300SDR이하일 경우는 세관표지(CN22)를 붙이고 300SDR 이 초과될 경우는 세관신고서(CN23)를 첩부를 정확히 작성하여 부착. 단,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 반송처리 및 통관지 연으로 인한 최종 배달지연 야기 할 수도 있음(ISDR=1,749원 (2012년 7월 1일 기준))
- 2)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동봉이 가능
- 3) 소형포장물 내부 또는 외부에 개봉한 송장(INVOICE)첨부 가능
- 4) 중량제한: 2kg까지

바.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Literature for the blind)

- 1) 점자로 된 서장 및 점자기호를 가진 활자판을 그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
- 2) 공인된 시각장애인기관에서(으로) 발송하는(되는) 시각장애인전용의 녹음물과 시각장애인전용의 특수종이
- 3)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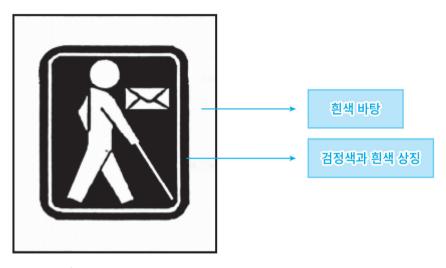








- 4)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질의 서류동봉 금지(우표, 요금인영 증지 및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불가)
- 5) 우편물 표면에 "Literature for the blind" 표시 및 아래상징 부착
- 6) 중량제한: 7kg까지



(크기 52×65mm): 52×65mm)

사. 우편자루배달 인쇄물(M-bag)

- 1) 동일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한꺼번에 다량의 인쇄물을 1개 또는 그 이상을 우편자루를 활용하여 발송하는 국제통상우편물
- 2) 우편자루 제한 중량: 10kg ~ 30kg(kg단위로 계산)
 - 우편자루 내 각 우편물의 중량은 2kg 이하이어야 함
- 3) 특수취급(등기, 국제속달, 배달통지)가능. 단, 등기는 취급국가가 제한되어 있음
- 4) 우편자루에 담긴 인쇄물의 각 묶음에도 수취인의 주소를 표시함
- 5) 수취인의 모든 정보가 기재되는 주소기표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충 분히 견고한 천, 튼튼한 판지, 플라스틱, 양피지 또는 나무에 접착 한 종이로 만들어진 단단한 것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질긴 끈으로 우편자루에 매달아 연결함
- 6) 통관회부료 4,000원 징수(우편요금과 별도)
- 7) 우편물을 넣은 국제우편자루(M-bag)를 다시 국내용 우편자루에 넣어 국제우체국으로 발송하되 국명표 및 송달증에 "M"표시를 함

제1장 국제우편 총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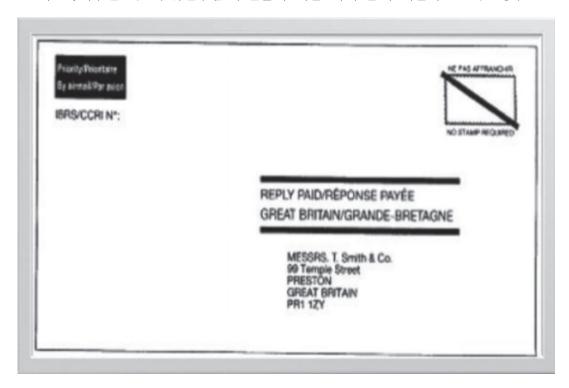
나. 계약체결 후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우편물 표시사항과 배달우체국 장이 부여한 계약번호를 수취할 봉투 또는 엽서에 인쇄한 견본 2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

6. IBRS 접수 우체국의 취급

- 가. IBRS우편물은 발송유효기간에 한정하여 발송·발송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송한 IBRS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돌려보냄
- 나. IBRS 우편물에는 날짜도장을 날인하지 않음
- 다. IBRS우편물은 모두 항공 취급하며, 그 밖의 부가취급 불가
- 라. 유효기간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된 IBRS 우편물은 접수시스템에 별도로 입력 하지 않고 국제항공우편물과 같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보냄

7. 외국에서 도착된 IBRS 우편물의 취급

가. 국내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우편물의 배달 예에 준해 배달하고 요금 징수





제5절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 EMS)

1. 의의

인터넷쇼핑몰 등을 이용하는 온라인 해외거래 물량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 제도를 활용하여 반품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

2. 서비스 개요

- 가. 취급우체국과 발송가능국가
 - 1) 취급우체국: 계약국제특급 이용우체국(집배국)에 한정함
 - 2) 발송가능국가: 일본
- 나. 취급대상 우편물
 - 1) 종류: EMS에 한정함(최대 무게 2kg)
 - 2) 우편물의 규격: 국가별 EMS 발송 조건의 규격과 같음
 - 3)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할 경우 반품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아래 서식의 반품서비스라벨을 구매자에게 전송, 구매자는 해당 우편물 표면에 반품서비스 라벨을 부착하여 접수
 - 라벨의 규격 : 최소 90×140mm, 최대 140×235mm













- 다. 부가취급: EMS 우편물로 취급, 그 밖의 부가취급은 할 수 없음
- 라. 요금의 징수
 - 1) IBRS EMS 우편물의 요금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게하며 후납 취급도 가능
 - 2)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IBRS EMS우편물의 요금은 통당 10,000원

제6절 국제반신우표권 (International Reply Coupons)

1. 개요

- 가. 국제반신우표권은 수취인에게 회신요금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부터 회답을 받는데 편리한 제도
- 나.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며 각 회원국에서 판매. 국제반 신우표권 1장은 그 나라의 외국 발송 항공보통서장 최저 요금의 우표와 교환

2. 판매

- 가. 우리나라에서 1매당 1,450원에 판매
- 나. 판매할 때에는 국제반신우표권의 왼쪽 해당란에 날짜도장을 날인

3. 교환

- 가.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반신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항공보 통서장의 4지역 20g 요금(850원)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
- 나.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제반신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교환할 수 없음

92 제2편 국제우편

Ψ

뒷면



4. 기타사항

- 가. 반신권은 우표류에 속하나 할인판매가 불가능
- 나. 다량의 반신권 판매 요구 시에는 정당사용 여부를 확인 후 판매
 - 한 사람이 하루에 20매를 초과 구입 요구 시 별도의 신청서 필요
- 다. 우표류와 교환 시 위조여부를 반드시 확인

<국제반신우표권(CN01) 사양>

앞면











제 4 장 | 국제특급우편(EMS)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

제1절 EMS 배달보장 서비스

1. 정의

EMS 배달보장일 계산프로그램에 따라 발송지(접수우체국)와 수취인의 우편 번호를 입력하면 상대국 공휴일, 근무일 및 항공스케줄이 고려된 배달보장 일자가 제공되고, 제공된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우편 요금을 배상

- 2. 대상국(10국) 한국, 일본, 미국, 중국, 호주, 홍콩, 영국, 스페인, 프랑스, 태국
- 3. 서비스 최초 시행일 : 2005. 7. 25
- 4. 접수우체국 : 전국 모든 우체국(취급국 포함)

[배달보장서비스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 대상지역 | 배달보장 가능 우정청간 공동 시행 - 배달보장 가능 우정청이 모든 지역에 대해 EMS 배달보장서비스 제공 |
| 송달기준 | 배달보장기간계산프로그램 활용 - 배달보장기간계산프로그램에서 안내되는 배달보장일자가 EMS 배달보장서비스 송달기준이 됨 ※ 서울 지역에서 접수시, 우정청별 주요도시에 대한 송달기준 산정 기본원칙 - 아시아지역 : 접수+2일 이내 배달보장 - 미국, 호주, 유럽 : 접수+3일 이내 배달보장("접수+2일 이내"란, 서울 에서 5.16. 접수시 중국 북경에 5.18.까지 정시배달이 보장됨을 의미함) |







| - | |
|---|---|
| | • |
| 1 | 7 |
| | |

| 구분 | 주요 내용 |
|--------------------|---|
| 송달기준보다 지연시 손해배상 | 책임우정청 책임 및 배상 - 고객의 행방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시에 한해 조사 후 변상 - 지연 배달 시 지연국으로 판명된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배상 ※ 근거규정 : 국제우편물 손해배상 산정기준 고시 |
| 우정청간 정산방법 | 우정청간 상호 정산 - 책임소재 확인 후 발송우정청 변상 및 사후 우정청간 정산 |

제2절 EMS 프리미엄 서비스 (민간 국제특송사 제휴서비스)

1. 배경 및 의의

- 가. 배경: 민간 국제특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품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1 년 세계적 물류회사인 TNT와의 전략적 제휴로 만들어 졌으며 이후 2012년 제안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UPS를 제휴 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영
- 나. 의의: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제휴를 통한 시너지 제고

2. 서비스 개요

가. 접수가능 우체국: 전국 모든 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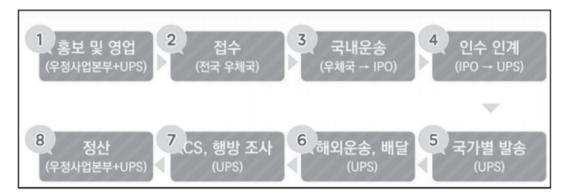








나. 업무흐름



다. 서비스 내역

- 1) 지역 및 대상 구분: 1 ~ 5지역 및 서류와 비서류로 구분
- 2) 부피제한: 우편물의 길이와 둘레의 합이 419cm 초과 불가(최대길이 270cm이하) ※ 길이와 둘레의 합 계산 방법: (가로+세로)×2+높이(가장 긴 변을 높이로 간주함)
- 3) 무게 산정: 중량과 체적중량 중 무거운 중량 적용 ※ 체적중량: 가로cm×세로cm×높이cm/6,000=OOkg
- 라. EMS 미 취급 국가를 비롯한 국제특송우편물의 해외 송달
 - 1) 배송국가 확대: EMS 교환국가 140여개 나라 → 210여개 나라
- 마. 국가별 EMS 제한무게를 초과하는 고중량 국제특송우편물 송달
 - 1) 취급무게 확대: 70kg까지 접수
- 바. SMS 배달안내, Export/Import 수취인 요금부담, 통관대행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



